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했거나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
- 6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	법 제45조제1항	2,000	2,500	3,000

나.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가능물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	법 제45조제2항 제1호	2,000	2,000	2,000
다.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않거나 재활용가능물을 평가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(법 제45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	법 제45조제3항 제1호	1,000	1,000	1,000
라.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물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경우	법 제45조제5항 제1호			
1) 고의로 공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경우		50	80	100
2) 정당한 사유 없이 공표하지 않은 경우		30	50	80
3) 그 밖의 경우		20	30	50
마.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제3항 제2호	1,000	1,000	1,000
바.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제5항 제2호			
1)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		50	80	100
2)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		30	50	80
3) 그 밖의 경우		20	30	50
사.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인계한 경우	법 제45조제2항 제1호의2	600	1,000	2,000
아. 법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분리·보관 및 처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제3항 제2호의2	300	500	1,000
자. 법 제16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	법 제45조제2항 제1호의3	600	1,000	2,000

에 따라 재사용하지 않은 경우				
차. 법 제1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않거나 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제5항 제3호			
1) 수집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		50	80	100
2) 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		30	50	80
카.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제4항 제2호	100	200	300
타. 법 제17조(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제5항 제4호			
1)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		50	80	100
2)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		30	50	80
3) 그 밖의 경우		20	30	50
파.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제2항 제2호	2,000	2,000	2,000
하.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제2항 제3호	2,000	2,000	2,000
거.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제2항 제4호	500	1,000	2,000
너.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·보관 및 인계하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제3항 제3호	300	500	1,000
더.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·배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제3항 제4호	300	500	1,000
러.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·에너지회수·처리실적을 제출하	법 제45조제5항 제5호			

지 않은 경우				
1)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		50	80	100
2)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		30	50	80
3) 그 밖의 경우		20	30	50
머.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경우	법 제45조제2항 제5호	500	1,000	2,000
버. 법 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제4항 제3호	100	200	300
서. 법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경우	법 제45조제2항 제5호의2	500	1,000	2,000
어.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제4항 제4호	100	200	300
저. 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	법 제45조제2항 제5호의3	500	1,000	2,000
처.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	법 제45조제2항 제5호의4	500	1,000	2,000
커. 법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제4항 제5호	100	200	300
터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	법 제45조제2항 제6호	500	1,000	2,000
퍼.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제4항 제6호			
1)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		100	200	300

2)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		80	150	200
3) 그 밖의 경우		50	80	100
허.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·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45조제5항 제6호			
1)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	50	80	100
2)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존하지 않은 경우		30	50	80
고.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·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제5항 제7호			
1) 고의로 보고·제출하지 않은 경우		50	80	100
2)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·제출하지 않은 경우		30	50	80
3) 그 밖의 경우		20	30	50
노.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·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제5항 제8호			
1) 고의로 작성·제출하지 않은 경우		50	80	100
2)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·제출하지 않은 경우		30	50	80
3) 그 밖의 경우		20	30	50